

화성시 진안동 공고 제 2024 - 5호

공 고 문

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1월 29일

진 안 동 장 (인)



1. 공고기간 : 2024. 1.29. ~ 2024. 2.16. (18일간)

2. 공고대상 및 사유

연번	대상자	생년월일	발급기간	공고사유
1	권O우	2007. 1.12.	2024. 2. 1. ~ 2025. 1.31.	폐문부재
2	안O울	2007. 1.25.	2024. 2. 1. ~ 2025. 1.31.	
3	이O빈	2007. 1.14.	2024. 2. 1. ~ 2025. 1.31.	
4	강O경	2007. 1.11.	2024. 2. 1. ~ 2025. 1.31.	
5	김O솔	2007. 1. 2.	2024. 2. 1. ~ 2025. 1.31.	
6	김O준	2007. 1. 2.	2024. 2. 1. ~ 2025. 1.31.	
7	이O연	2007. 1.19.	2024. 2. 1. ~ 2025. 1.31.	
8	하O셉	2007. 1.14.	2024. 2. 1. ~ 2025. 1.31.	
9	박O영	2007. 1.26.	2024. 2. 1. ~ 2025. 1.31.	
10	박O빈	2007. 1. 9.	2024. 2. 1. ~ 2025. 1.31.	

3. 안 내

가.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공고하오니, 사진 1매(6월 이내 촬영한 가로 3.5cm * 세로 4.5cm 탈모상반신 사진)를 지참하고 발급기간 안에 진안동 민원실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소명한 후 주민등록증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동 주민등록증 담당(031-5189-450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